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투자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7조에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영 제98조제2항제2호의 운용방법(이하 “모델포트폴리오”라 한다)

의 자산을 배분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다만, 자산가치의 급격한 변동으로 불가피하게 그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 및 모델포트폴리오 최초 운용 개시 시점부터는 3개월까지, 파생결합증권의 평가금액 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그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는 만기도래 등 그 사유가 해소되는 시점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각 모델포트폴리오의 자산 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같은 금융상품을 편입하는 행위

나. 각 모델포트폴리오의 자산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별표 12의3에서 구분한 금융상품군중 같은 종류의 금융상품군을 편입하는 행위. 단, 집합투자증권을 편입하는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나목3)의 위험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의 모델포트폴리오의 경우는 제외한다.

다. 공모로 발행되지 않은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부동산투자

회사의 주식 또는 채권을 편입하는 행위

21. 투자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투자일임 계약기간과 투자일임재산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의 가중평균만기기간의 차이가 90일을 초과하여 운용하는 행위

22. 투자일임계약에 대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리스크관리 기준을 마련하지 않는 행위

가. 투자자가 동의한 만기를 준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도록 하는 사항

나. 금리변동 등 시장상황의 변동이 있는 경우 투자일임 계약기간보다 만기가 긴 금융투자상품의 교체 등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사항

23. 투자자에게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평가가액을 제공할 때 장부가 등 여타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보다 우선하여 제공하는 행위

제4-78조의3 및 제4-78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8조의3(모델포트폴리오의 보고) ① 영 제98조제2항에 따라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을 체결하는 투자일임업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7영업일 전에 영 제98조제2항제2호에 따라 마련한 모델포트폴리오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모델포트폴리오의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4-78조의4(모델포트폴리오의 공시) ① 영 제98조제2항에 따라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을 체결한 투자일임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해당 투자일임업자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1. 각 투자자 유형에 따른 모델포트폴리오의 개수
2. 각 모델포트폴리오에 포함되는 금융상품의 종류·비중·위험도 등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
3. 각 모델포트폴리오간 차이에 관한 사항
4. 각 모델포트폴리오의 위험도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자는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률 등의 비교 공시, 통계조사 및 분석 등을 위한 자료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82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의 특정한 상품(제4-93조제10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의 특정한 상품을 말한다)에 대하여 영 제104조제5항에 따라 신탁보수를 수취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신탁보수의 수취 방법과 각 방법에 따른 보수의 차이 등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투자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
2.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평균 보수율 등을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할 것

⑤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의 계산으로 제삼자와 증권의 매매 등 거래를 하는 때에는 수탁자의 지위에서 거래를 한다는 사실을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

제4-9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109조제1항제4호차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같은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 따른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으로서 신탁재산으로 이해관계인의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9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2조의3(보험금청구권 수탁 기준) 영 제109조제3항제10호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3천만원을 말한다.

제4-93조에 제33호부터 제3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3. 투자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신탁 계약기간과 신탁재산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의 가중평균만기기간의 차이가 90일을 초과하여 운용하는 행위

34. 신탁계약에 대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리스크관리 기준을 마련하지 않는 행위

가. 투자자가 동의한 만기를 준수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하도록 하는 사항

나. 금리변동 등 시장상황의 변동이 있는 경우 신탁 계약기간보다

만기가 긴 금융투자상품의 교체 등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사항. 다만, 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35. 투자자에게 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평가가액을 제공할 때 장부가 등 여타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보다 우선하여 제공하는 행위

별표 12의3을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7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영 제99조제4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p> <p>1. ~ 19. (생략)</p> <p><u><신설></u></p>	<p>제4-7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 ----- ----- -.</p> <p>1. ~ 19. (현행과 같음)</p> <p>20. <u>영 제98조제2항제2호의 운용방법(이하 “모델포트폴리오”라 한다)의 자산을 배분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다만, 자산가치의 급격한 변동으로 불가피하게 그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 및 모델포트폴리오 최초 운용 개시 시점부터는 3개월까지, 파생결합증권의 평가금액 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그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는 만기도래 등 그 사유가 해소되는 시점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u></p> <p><u>가. 각 모델포트폴리오의 자산 총액의 100분의 30을</u></p>

초과하여 같은 금융상품을
편입하는 행위

나. 각 모델포트폴리오의 자
산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별표 12의3에서
구분한 금융상품군중 같은
종류의 금융상품군을 편입
하는 행위. 단, 집합투자증
권을 편입하는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
나목3)의 위험등급 중 가
장 낮은 등급의 모델포트
폴리오의 경우는 제외한
다.

다. 공모로 발행되지 않은 집
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또
는 채권을 편입하는 행위

21. 투자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
하고 투자일임 계약기간과 투
자일임재산에 편입된 금융투
자상품의 가중평균만기간의
차이가 90일을 초과하여 운용
하는 행위

22. 투자일임계약에 대해 다음

<신 설>

<신 설>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리스크관리 기준을 마련하지 않는 행위

가. 투자자가 동의한 만기를 준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도록 하는 사항

나. 금리변동 등 시장상황의 변동이 있는 경우 투자일임 계약기간보다 만기가 긴 금융투자상품의 교체 등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사항

23. 투자자에게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평가가액을 제공할 때 장부가 등 여타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보다 우선하여 제공하는 행위

제4-78조의3(모델포트폴리오의 보고) ① 영 제98조제2항에 따라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을 체결하는 투자일임업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7영업일 전에 영 제98조제2항제2호에 따라 마련한 모델포트폴리오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모델포트폴리오의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4-78조의4(모델포트폴리오의 공시) ① 영 제98조제2항에 따라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을 체결한 투자일임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해당 투자일임업자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1. 각 투자자 유형에 따른 모델 포트폴리오의 개수
2. 각 모델포트폴리오에 포함되는 금융상품의 종류·비중·위험도 등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
3. 각 모델포트폴리오간 차이에 관한 사항
4. 각 모델포트폴리오의 위험도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자는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률 등의 비교 공시, 통계조사 및 분석 등을 위한 자료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82조(신탁업무의 방법 등) ① ~ ③ (생략)

<신설>

<신설>

제4-91조(단순 중개 목적의 거래 등) ①·② (생략)

제4-82조(신탁업무의 방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의 특정한 상품(제4-93조제10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의 특정한 상품을 말한다)에 대하여 영 제104조제5항에 따라 신탁보수를 수취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신탁보수의 수취 방법과 각 방법에 따른 보수의 차이 등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투자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
2.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평균 보수율 등을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할 것

⑤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의 계산으로 제삼자와 증권의 매매 등 거래를 하는 때에는 수탁자의 지위에서 거래를 한다는 사실을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

제4-91조(단순 중개 목적의 거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영 제109조제1항제4호차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같은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 따른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으로서 신탁재산으로 이해관계인의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 설>

제4-92조의3(보험금청구권 수탁기준) 영 제109조제3항제10호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3천만원을 말한다.

제4-9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영 제109조제3항제10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9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

1. ~ 32. (생략)

1. ~ 32. (현행과 같음)

<신 설>

33. 투자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신탁 계약기간과 신탁재산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의 가중평균만기기간의 차이가 90일을 초과하여 운용하는 행위

<신 설>

34. 신탁계약에 대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리스크관리 기준을 마련하지 않는 행위
가. 투자자가 동의한 만기를 준수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하도록 하는 사항

나. 금리변동 등 시장상황의 변동이 있는 경우 신탁 계약기간보다 만기가 긴 금융투자상품의 교체 등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사항. 다만, 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 설>

35. 투자자에게 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평가가액을 제공할 때 장부가 등 여타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보다 우선하여 제공하는 행위

<별표 12의3>

금융상품군의 분류 기준

구 분	금융상품
1종	예금·적금·예탁금·예치금(금융투자상품은 제외), 환매조건부로 매매하는 증권
2종	집합투자증권,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3종	파생결합증권
4종	국내 상장주식 및 이에 따른 신주인수권 증서
5종	채권